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세부·분과전문의 및 전임의 법적 근거 마련〉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292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9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 윤의원 등 24인

(2) 제 안 일 : 2025. 1. 7.

(3) 회 부 일 : 2025. 1.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 체계에는 전임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거 규정이 부재함.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로서 전임의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전임의의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 등이 적절히 관리 및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하고,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로 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7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전문의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된 자를 세부·분과전문의로 구분하고, 그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77조(전문의) ①·② (생략)	제77조(전문의·전임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의 중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한다.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의 중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라 한다. 이 경우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는 법정 전문과목학회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⑤ 제3항의 세부전문의 및 제4항의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라 한다. 이 경우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

④ (생략)	<u>과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시행일: 공포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77조¹⁾는 일정한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의사 등을 ‘전문의’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26개의 전문과목만 나누고 있을 뿐,²⁾ 전문의의 종류를 추가로 세분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대한의학회에서 2001년부터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를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22개의 분과전문의와 4개의 세부전문을 인증하고 있고,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세부·분과전문의 인증을 받거나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2~3년 정도 세부적인 분과를 정해 병원실습을 하는 임상강사(‘전임의’ 또는 ‘펠로우’) 과정이 존재함.

1) 「의료법」 제77조(전문의)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대한의학회 세부·분과전문의 인증분야 현황>

	학회명	세부·분과 전문분야명	최초 인증일	전문의수 (명)
분과 전문의	대한내과 학회	내과 소화기 분과	2004.7.14.	3,254
		내과 순환기 분과		1,343
		내과 호흡기 분과		793
		내과 내분비-대사 분과		942
		내과 신장 분과		1,081
		내과 혈액종양 분과		675
		내과 감염 분과		317
		내과 알레르기 분과		161
		내과 류마티스 분과		421
	대한소아 청소년학회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2006.3.9.	88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149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		96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136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분과		220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		58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및호흡기 분과		145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		107
	대한외과 학회	외과 간담체 분과	2012.11.13.	314
		외과 대장항문 분과		523
		외과 소아 분과		59
		외과 위장관 분과		230
		외과 유방질환 분과	2014.7.8.	430
세부 전문의	대한수부외과 학회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2005.6.14.	242
	대한소아심장 학회	소아심장 세부전문의	2006.3.9.	168
	대한중환자 의학회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2008.4.15.	844
	대한외상학회	외상학 세부전문의	2010.3.9.	280

자료: 2021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연보, 대한의학회(전문의수는 2021.12.31.기준)

□ 전임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전공의보다 실력은 인정받았다는 점, 그러나 자격 취득 후 임상경력이 짧아 실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에서 교수와 전공의 사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와 달리 전임의들은 수련과정에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오래되지 않아 병원에서

역할과 지위가 불분명함. 이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임의에게 과도한 업무 분담이 주어졌다는 지적이 있음.³⁾

- 대한병원의사협회의회는 2018년 성명서에서 전문의 근무시간을 온콜⁴⁾ 포함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병원의사특별법’을 제정해 전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⁵⁾

2025년도 서울대병원의 전임의 모집에서 일부 필수과는 지원자가 없어 합격자가 0명인 곳도 발생함. 2025년도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특수성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전임의 모집에서 합격자수는 모집인원보다 지속적으로 부족하였음.⁶⁾

□ 따라서 법률에서 세부·분과전문의를 규정하고 그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수련의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임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3) 한석문 젊은의사협의회 보건정책위원(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강사), “2017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교수와 전임의 등에게 과도한 업무 분담이 주어졌으며 상당수가 번아웃을 경험하는 중임”, (신현영의원 주최, 2030 전공의 간담회, 2023.4.17.)

이민주 기자,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 후 전임의인 펠로우의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수련병원들 대부분은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으로 생긴 야간 당직 등 업무 공백을 전임의는 물론 교수의 업무 시간을 늘려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2018.5.9.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4) On-call,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은 병원 밖에서도 항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다가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복귀해 응급 수술을 진행하는 것

5)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6) 서울신문 한지은 기자, “내년 서울대병원 전임의 올해의 48%…전공의 ‘수련 특례’ 카드 꺼내나” (2024.11.26.) 中 합격자수/모집인원: 2023년도 400/476, 2024년도 397/479, 2025년도 208/459

< 2025년도 서울대병원 임상강사(전임의) 진료과별 1차 모집 현황(일부) >

	진료과	모집	지원
본원	신경외과	13	15
	정형외과	14	13
	안과	14	13
	가정의학과	5	7
	정신건강의학과	9	9
	감염내과	4	1
	내분비대사과	6	1
	영상의학과	16	1
	응급의학과	12	0
	신경과	10	0
	산부인과	12	0
	정형외과	13	11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13	10
	안과	12	7
	소아청소년과	7	7
	신경외과	6	4
	가정의학과	2	3
	산부인과	9	2
	정신건강의학과	6	1
	소화기내과	12	1
	병리과	4	0
	중환자진료부	4	0
	심장혈관흉부외과	6	0

자료: 서울대병원(KBS 보도에서 재인용)⁷⁾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한의학회 인증 세부·분과전문의와 다른 비인증 제도를 두거나 이와 무관하게 전임의 제도를 운영하는 분야도 많은 현실에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전임의 수련과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표준화되어있지 않고 전공의 수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의사교육 수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둘째, 개정안은 현재 대한의학회가 운영중인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7) KBS, 서울대병원 ‘전임의 모집’ 절반도 못 채웠다…응급의학과 지원 ‘0명’, 2024.10.25

것으로, 대한의학회의 ‘분과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세부·분과전문분야의 기준을 대한의학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한의학회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관련 규정 중 개정안 관련내용>

분과전문의 제도인증 규정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1. "분과전문분야"란 법정 전문과목학회(이하 "전문과목학회"라 한다.)가 정한 규정에 따라 1개의 전문과목 분야 범위 내에서 분과된 전문분야를 말한다. 2. "분과전문의"란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과목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분과된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전문의를 말한다. 3. "전임의"란 환자의 책임 진료를 통한 의학 지식 축적과 의료 기술을 습득하는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말한다. 4. "분과지도전문의"란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분과전문의 제도인증"이란 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을 위해 전문과목학회가 정한 규정의 적절성과 규정 시행의 엄정성을 심사하여 전문과목학회 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의 타당성을 의학회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세부전문분야"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 세부전문학회(이하 "세부전문학회"라 한다.)가 정한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가 참여한 세부전문분야를 말한다. 2. "세부전문의"란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전문의를 말한다. 3. "전임의"란 환자의 책임 진료를 통한 의학 지식 축적과 의료 기술을 습득하는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말한다. 4. "세부지도전문의"란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이란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을 위해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의 적절성과 규정 시행의 엄정성을 심사하여 세부전문학회의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의 타당성을 의학회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개정안 제7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를 인정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개정안은 세부·분과전문의의 자격 및 전임의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전문의와 마찬가지로 자격인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을 국가로 이관하는 만큼 세부·분과전문분야의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국가가 정하도록 하며, 전임의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⁸⁾

셋째,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므로, 법률에서 대한의학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한의학회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한의학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해외 주요 사례 >

국가	세부전문의 운영 현황
미국	· (미국 전문의료위원회(ABMS: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전문학회 연합체로서 각 학회의 전문·세부전문의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 관리, 인증을 관장 · 단일 또는 여러 학회가 공동으로 85개의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운영
일본	· 각 해당 학회를 중심으로 4개의 세부전문분야영역 전문의(순환기, 혈액, 신장, 소화기외과) 제도 운영
캐나다	· (캐나다 의학회) Committee on Specialties에서 세부전문과목 인정요건 제정, 세부전문과목의 기존 인정상태 점검 및 신설 여부 결정 등 관리 · 34개 세부전문의 운영(2011년 기준)
영국	· (영국의학협회) 세부전문의 인증을 관장하며 세부전문과목 교육과정·평가 시스템 인증 또는 폐지 권한 보유

자료: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대한의학회, '21.1월)

□ 참고로, 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부·분과전문의 제도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료전문단체가 관장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8) 현재 전임의의 수련환경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294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전임의 역할 및 법적지위를 분명히 하여 전임의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 등이 적절히 관리·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세부·분과 전문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 전임의 제도 법제화에 대한 관련 단체 반대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대한의사협회(반대)

□ 전임의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 전임의 제도가 담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채 전임의의 법적 지위만 명확히 하는 것은 현행 전임의 제도를 고착화시켜 파생되는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함.

- 한편 대한의학회 인증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전임의 과정도 있지만, 비인증 제도를 운영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와 무관하게 전임의 제도를 운영하는 분야도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우려가 있음.

- 전임의 수련 과정은 다양한 측면(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표준화 및 질 관리가 담보되어야 하며 전임의 수련은 전공의 수련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료체계와

의료인 수급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사 교육 수련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

3) 대한병원협회(반대)

□ 국내 의료인력이 과도하게 전문화·세분화되어 양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임의 법제화 여부’는 국내 의료인력 시스템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료인력과 세부전문분야의 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현재 대한의학회의 제도인증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의 당초 도입목적이 전문분야의 우수한 임상 의사 양성을 통한 학문과 의료기술 발전,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 국민 보건 향상 기여 등임을 고려할 때, 수련과정을 법령으로 규정할 경우 급변하는 의학 지식 및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계의 유연한 대응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4) 대한한 의사협회(반대)

□ 의료법은 의사만의 법률이 아니라 의료인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므로 의사만 해당되는 사항을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따라서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의료법이 아닌 ‘전문직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5)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현행 의료법에는 전임의에 대한 정의와 근거 규정이 없어 의료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에 세부전문의 또는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공감함.

문 의 처
02)6788-5494